§§

産業環境情報

-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상) -

이명균 LG환경안전연구원 연구위원

(註 : 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정보 게재 자료인용)

1. 총량규제의 의의

오염물질배출 총량규제란 어떤 특정지역의 환경기준 달성이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하여 배출하기만 하면 그 배출 총량은 아무리 많더라도 규제하지 않는 과거의 농도 규제보다 훨씬 엄격하고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도규제는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편리하고 시행이 용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오염배출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지역에서는 환경보전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운 제도이다.

이에 반해 총량규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위한 준비가 복잡하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환경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총량규제 실시근거

이미 법규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총량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와 기반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는 (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수질오염) 상태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모두에 대해 정부가 총량규제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총량규제의 성공요인

농도규제와는 달리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이 수용 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확히 추산하여야 한다. 배출총량이 수용 가능량보다 크게 추산될 경우 환경보전의 목표에 미흡할 것이고 작게 추산될 경우에는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추산된 허용배출 총량을 개별 배출업소에 공정하게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공정한 할당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오염자가 총량규제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이 투자액은 저감비율이 높아질수록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저감을 위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지역경제를 곤궁으로 몰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시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 뜻이 훼손됨은 물론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총량규제가 그 기대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울산 · 온산 공단에서의 총량규제 시행을 계속 연기하는 것도 이같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준비의 부족 이외에도 총량규제가 기업의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는 울산 · 온산 공단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이 지난 94년 17만톤에서 2000년에는 2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총량규제를 통해 오는 2000년까지 12만톤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이 연간 3000억에서 40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되어 시행령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유보하고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탈황설비 투자를 추진 중인 업체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시행령안은 0.3% 저황유를 쓰는 경우 부과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연료는 국내에서 2001년에나 가서야 일부 공급이 가능하므로 면제대상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하, 4. 일본의 수질총량규제 5. 배출권거래제도로 발전 >

- 1999년도 환경관련 법령 개정 계획 -

법 률	입 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제출	국회제출	시행예정
1. 환경정책기본법	'99. 2월	'99. 3월	'99. 4월	'99. 6월	'99. 8월	2000. 3월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9. 5월	'99. 6월	'99. 7월	'99. 8월	'99. 9월	2000. 7월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98. 1월	'98. 5월	'99. 2월	'99. 3월	'99. 4월	'99. 12월
4. 자연공원법	'99. 3월	'99. 5월	'99. 6월	'99. 7월	'99. 8월	2000. 1월
5. 토양환경보전법	'99. 4월	'99. 5월	'99. 6월	'99. 8월	'99. 9월	2000. 6월
6.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별조치법	'98. 10월	'98. 11월	'99. 2월	'99. 5월	'99. 6월	2000. 1월
7. 대기환경보전법	'99. 2월	'99. 2월	'99. 3월	'99. 3월	'99. 5월	2000. 1월
8. 소음 · 진동규제법	'99. 2월	'99. 2월	'99. 3월	'99. 3월	'99. 5월	2000. 1월
9. 수질환경보전법	'99. 2월	'99. 2월	'99. 2월	'99. 3월	'99. 4월	'99. 10월
10. 먹는물관리법	'98. 11월	'98. 11월	'98. 12월	'99. 1월	'99. 2월	2000. 5월
11. 먹는물관리법	'99. 4월	'99. 6월	'99. 6월	'99. 7월	'99. 8월	2000. 7월
12. 폐기물관리법	'99. 2월	'99. 3월	'99. 3월	'99. 4월	'99. 5월	'99. 8월
13.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99. 2월	'99. 2월	'99. 3월	'99. 4월	'99. 5월	'99. 8월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99. 2월	'99. 2월	'99. 3월	'99. 3월	'99. 5월	'99. 11월
15. 한국자원생공사법	'99. 4월	'99. 5월	'99. 6월	'99. 7월	'99. 8월	2000. 1월